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4호

전기설비기술기준중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 2001. 12. 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2003. 2. 28)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기술지원팀

제1조. "(목적)"을 "(목적 등)"으로 하고,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고시의 기술적인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현행 "제29호"를 "제30호"로 하며, 현행 "제30호"를 "제31호"로 한다.
28. "이격거리"라 함은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중 "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로 한다.

제36조. 제2항 제9호중 "저압용의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를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로 한다.

제61조. 제3항중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을 "전기 사용 장소의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으로 하고, 제8호중 "중간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를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81조. 제1항중 "저압 가공전선을 나전선(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를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2호중 "이격거리는"을 "이격거리(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별표 30의1과 같다. 이하 이조와 제92조, 제100조, 제140조, 제145조, 제150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51조. 제6항 제2호중 "자소성이"를 "자소성(自消性)이"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21] (1)내연성 시험에"를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21]내연성 시험에"로 한다.

제156조. 제1항중 "내화성의 격벽(隔壁)"을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으로 한다.

제191조. 제5항중 "접지하여야 한다."를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6조 제②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 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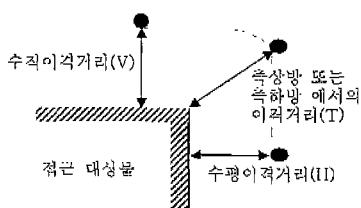
제245조. 제4항중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를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0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1(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 거리 산정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 거리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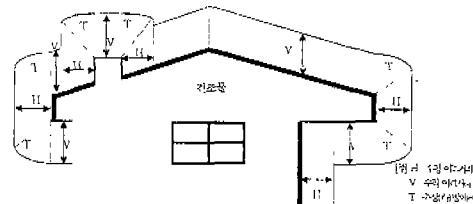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건조물 수직단면에서의 이격거리 관계

2. 측상방 또는 측하방에서의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그림 2] 측상방 및 측하방에서의 이격 거리 적용범위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6조제2항제9호(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91조제5항(단서의 접지극 있는 콘센트 사용하여 접지) 및 제6항의 규정은 2004.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신고(인가)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제3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축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은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